

(공시보고서 표지 - 공통)

주요 경영상황 공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에 따라 당사의 주요경영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20 년 10 월 16 일

금융투자협회 귀중

회 사 명 :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영문명) Woori Asset Trust
(홈페이지) <http://www.wooriat.com>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9, 20층
(전 화) (02) 6202-3000

대 표 이 사 : 이 창 하 이 창 재

담 당 임 원 : (직 책) 경영기획본부장
(성 명) 조 광 희 (전 화) (02) 6202-5115

작 성 자 : (직 책) 준법지원팀장
(성 명) 안 광 수 (전 화) (02) 6202-5119

제 출 이 유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9조에 따른 주요 경영상황

※ 본 건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상황 공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36조제2항 및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9조에 따른 『법정공시사항』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제1항제15호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6-6-2호)

소송 등의 판결·결정

1. 사건의 명칭	신탁사무처리비용상환
2. 원고·신청인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3. 판결·결정내용	당사 패소
4. 판결·결정사유	타익신탁의 우선수익자인 피고들이 우선수익권 포기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신탁계약 체결시부터 우선수익자가 아니었던 것으로 되어 수탁자인 당사에 대하여 비용상환의무를 면하고, 우선수익자들이 위탁자와 연대하여 비용을 부담한다는 취지의 신탁계약 특약사항이 수익권 포기를 배제하거나 수익권 포기로 우선수익자의 지위에서 벗어나더라도 비용상환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의 약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함.
5. 관할법원	대법원
6. 판결·결정일자	2020.10.15.
7. 확인일자	2020.10.15.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기재상의 주의>

- 주1) 당해 법인의 경영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가처분 포함) 등의 판결·결정이 확인된 때 공시한다.
- 주2) “판결·결정사유”는 소송의 포기·취하·인낙·화해, 판결, 결정, 명령, 신청 철회 등 사건이 종료된 원인을 기재한다.
- 주3) 상기사항 외의 소송 등의 판결·결정과 관련하여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은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한다.